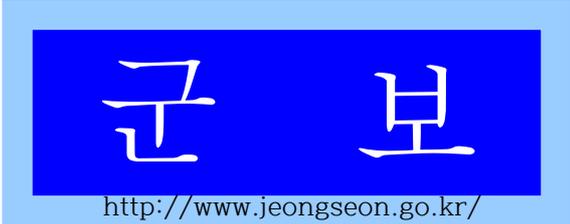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8호 2022. 2. 3. (목)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2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2-23호 수요응답택시 운행구역 추가 변경(확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2-25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82호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6
- 정선군 공고 제2022-83호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2-113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1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2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남면(증산) 도시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군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변경)하고자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2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남면 무릉리 614-2 일원	-	증)3,506	3,506	금회	-

2)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신설 - A= 3,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무릉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22-23호

수요응답택시 운행구역 추가 변경(확대) 고시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희망택시 운행구역 대상지역 변경(확대)를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정 선 군 수

1. 희망택시 운행구역 변경(확대)

- ◎ 변경 전 : 남면 광덕1리, 광덕2리 ⇨ 남면·정선읍 소재지
- ◎ 변경 후 : 남면 광덕1리, 광덕2리 ⇨ 남면·정선·고한·사북읍 소재지
- 시행일자 : 2022. 2. 7.

※ 강원희망택시 변경 대상 지역

연번	대상지역	발급수	운행구역	비고
1	고한읍 (소두문동, 부금소, 양지, 막골)	29	고한·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2	화암 백전리(서원기)	6	화암·사북읍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3	남면 무릉2리(능전)	27	남면·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4	남면 광덕1리(수령)	21	남면·정선·고한·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5	남면 광덕2리(서마루)	5	남면·정선·고한·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6	여량면 남곡리	5	여량·임계면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7	북평 문곡리(스무골)	3	북평·정선읍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8	그 외 지역(읍·면)	409	해당 읍·면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2. 희망택시 운임제 지역 현황

연번	대상지역		발급수	운임체계	비고
1	정선읍 (전 지역)	정선읍	117	구간제	
		(골안)	18	7,000원 (택시비 6,000원+1,000원*)	
		(오반동)	17	7,000원 (택시비 6,000원+1,000원)	
		(개끝)	7	5,000원. (택시비 4,000원+1,000원)	
		(그외 지역)	75	거리비례제	
2	고한읍 (전 지역)	고한읍	29	구간제	
		(양지마을)	4	6,600원 (택시비 5,600원+1,000원)	
		(막골)	8	6,600원 (택시비 5,600원+1,000원)	
		(그외 지역)	17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고시 제2022-25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릉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정 선 군 수

-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무릉1·2·3지구
-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위 치	비 고
무릉1지구	815 / 432,113m ²	남면 무릉리 630-5번지 일원 (증산보건진료소 일원)	
무릉2지구	234 / 97,532m ²	남면 무릉리 590-1번지 일원 (묵산아파트 일원)	
무릉3지구	455 / 720,924m ²	남면 무릉리 748-10번지 일원 (증산어린이집 일원)	
합 계	1,504 / 1,250,569m ²		

-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5.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41,2265)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82호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정 선 군 수

1.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 2) 처분내용: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식물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 농작업자의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2.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 ※ 관련 산업 종사자: 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 관계자 등
- 2) 처분내용: 과수원 출입용 신발·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 농작업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 소독방법 :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살포

- 소형도구(전정·적과가위, 전정톱 등): 작업도중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소독
- 대형 농기구(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등): 소독액을 과원 출입 시 또는 작업 중 수시로 골고루 살포

- 복장(장갑, 신발, 작업복 등): 소독액을 분무기로 골고루 수시 살포
- ※ 주의사항: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소독 시 금속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음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시 소독을 통해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 효과 증가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3.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품목별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에 약제살포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8조

4) 처분사유: 약제 살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적용하여 방제효과 제고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4.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1) 처분당사자: 정선군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과수(사과·배 등) 묘목·종자 생산자, 묘목 유통업자, 묘목 반출자(구입자)

2) 처분내용: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관리, 건전 묘목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과수화상병 의심 묘목 즉시 신고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의 2, 제38조, 제50조

4) 처분사유: 묘목장 등 묘목생산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 묘목 생산 및 유통,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를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 차단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5.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과수 재배 전 생육기에 상시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사전예방을 준수하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해당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우선 신고 (☎ 1833-8572)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 2, 제38조, 제50조

4) 처분사유: 자가 예찰 강화 및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농가책임 부여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6.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과수 경작자는 주요 작업일정, 농작업자의 교육 및 소독 이행사항, 묘목 식재, 약제 살포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 제50조
- 4) 처분사유: 과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농가 의무사항을 영농일지를 통해 확인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7.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 2) 처분내용: 외부인 출입제한, 타 과수원 방문 자제, 농작업자(작업단)의 등록·교육·신고, 과수원 출입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과원·지역 간 과수화상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역간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작업자(작업단)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8.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 2) 처분내용: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
 - ◇ 과수화상병 매개곤충의 종류(미국 USDA 등)
 - 꿀벌, 개나무좀류 2종, 나무좀류, 개미류, 진딧물류 2종, 파리류, 노린재류 4종, 매미충류 2종, 나무이류 등이 보고되어 있음
 - * 출처: Van der Zwet T & H.L. Keil, 1992. Fire Blight
 - ◇ 국내 야생곤충의 과수화상병균 검출 조사결과
 - ' 16~' 18년: 꿀벌
 - ' 19년: 갈색날개매미충, 꽃등애
 - ' 16~' 18년: 기생파리과, 장님노린재과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 4) 처분사유: 매개곤충과 야생동물을 통제하여 과수화상병 전파 가능성 차단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9.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및 과원 출입자
-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의 과원 밖 이동·유출 금지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6조, 제37조, 제50조
- 4) 처분사유: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전염원의 이동으로 지역간 확산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 금지 및 유입차단 필요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10.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1) 처분당사자: 정선군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 2) 처분내용: 과수화상병 의심 궤양은 신고하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제거 후 해당 약제 도포
-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의 2
- 4) 처분사유: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가 예찰을 실시하고, 주요 병원균 유행처인 궤양 등 감염위험원을 사전제거하여 병 발생 환경을 최소화
- 5) 처분기간: 2022. 01. 21.~별도 해제 시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01. 21. 00:00부터

11. 기타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이외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 식물방역법에 농가예방 수칙 의무 등 법령개정이 진행 중이며, 법 개정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감액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정선군 공고 제2022-83호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정 선 군 수

1. 모집기간 : 2022. 1. 21.(금) ~ 2. 3.(목)
2. 모집분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분야
(농업·농촌정책,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산업개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등)
3. 모집인원 : 21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선정인원 7명의 3배수)
4. 모집지역 : 전국(근무지 기준 강원도외 타 시·도 20% 이상 모집)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조건
 -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② 해당분야 정부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
상 경력자
 -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모집분야) 전공자
 - ④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⑤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제외대상
 - ①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④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평가위원의 회피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회피 사유에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공문, 우편, 방문, 이메일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이메일 : babolan@korea.kr

※ 공문 및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공문제출시 비공개로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담당자 ☎ 033-560-2372)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나.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보안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공인된 자격서류(제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위원 : 7명(예비위원 5인 별도 선정)

나.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7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번호 추천

- 선정기준 : 다빈도 순서로 선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

라. 평가수당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9. 제안서 평가예정일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2. 10.(목) 14:00~ (예정 / 확정 시 개별 통지)

나. 장 소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 입찰 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안내)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봄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라.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수당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바.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말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033-560-2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상기 일정은 정선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식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e-mail						
학 력 사 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 유 현 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2.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1. 상기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본인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실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2.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 업체의 사업계획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평가위원 후보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정선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록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동의인 :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정선군은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및 경력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정선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등 록 신 청 서 작 성 방 법

1. 등록신청서는 공문(비공개), 이메일, 방문접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33-560-2372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기획팀
 - E-Mail : babolan@korea.kr

2. 성명 ~ 직장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분야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4.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경력사항은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무처, 직위, 근무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 보유현황은 해당자에 한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통사항 :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작성기준일은 2022. 1. 19.로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113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빠진 우리군의 젊은 층 인구유출을 막고 이들을 위한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청년나이 : 18세 이상 45세 이하 ⇒ 18세 이상 49세 이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033 - 560 - 2253
- ▶ 팩 스: 033 - 560 - 2590
- ▶ 이메일: achtungi@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45세” 를 “49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u>45세</u>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49세</u> ----- -----.</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